

최근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현황

- 공시불이행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은 유가증권 기업에 비해 코스닥 기업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며, 최근 코스닥 기업의 지정 건수도 증가
- 불성실공시 유형별로는 중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불성실공시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 못지않게 공시 전문인력 확보 등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

- 불성실공시는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변복 또는 공시변경을 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및 제재금을 부과
 - 공시제도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소 공시로 구분되고 거래소 공시는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나누어져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불성실공시로 규정
 -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공적인 제재 외에 한국거래소가 자율규제로 제재조치하는 제도
 - 불성실공시 유형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기한내 공시하는 않은 경우 공시불이행과 이미 공시한 내용에 대해 취소 및 부인하는 공시변복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인 공시변경으로 구분

불성실공시 유형

유형	내용
공시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변복	이미 신고·공시한 중요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
공시변경	기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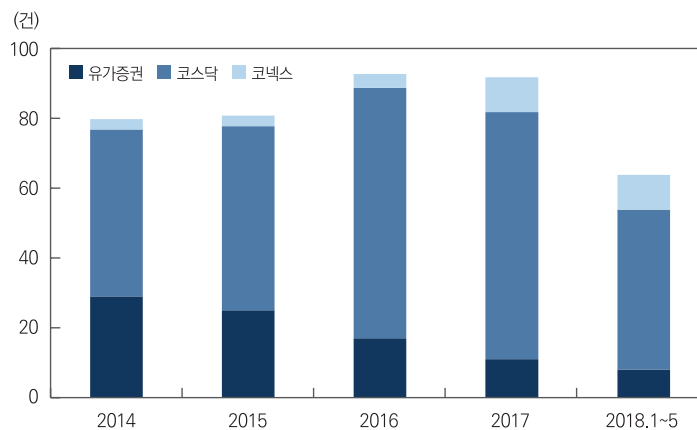
-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면 지정예고를 하고, 해당 기업은 지정예고 통보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기간 종료 1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

-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및 5억원 이하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 대한 교육 및 개선 계획서 제출 요구 가능
 -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을 부과하는데 5점 이상인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최대 5억원까지 제재금 부과 가능
 - 불성실공시 법인임을 공표하고 공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개선 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소의 요구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추가 벌점 부과 가능

□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지정은 유가증권 기업에 비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지정 사유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순으로 발생

- 최근 5년간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는 2014년 48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도 71건이 지정된 반면, 유가증권 기업은 2017년 11건에 불과하며 매년 감소
 - 2018년 5월말 현재까지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지정건수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건 증가
- 불성실공시 유형으로는 중요 사항에 대해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미 공시한 사항에 대해 번복하여 제재받는 경우도 증가 추세
- 코스닥 기업의 지정건수가 유가증권 기업에 비해 많은 이유는 코스닥 상장기업 수의 증가 및 공시 전문인력 부족, 기업 내부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부족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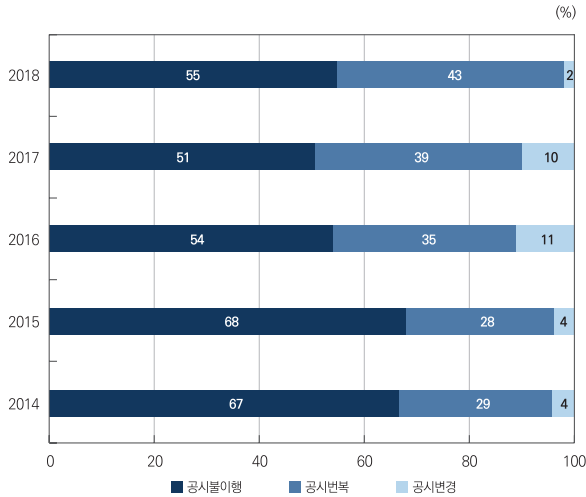
시장별 불성실공시 지정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현황

유형별 비중



자료: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불성실공시 세부 내용

(단위: 건)

	2014	2015	2016	2017
최대주주·경영권 변동	9	10	10	18
유상증자	7	4	9	10
단일판매·공급계약	6	3	6	4
대출·사채원리금 미지급	5	1	2	1
실적예측공시	2	4	2	2
조회공시	2	2	7	0
타법인주식 취득·처분	2	10	6	8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2	1	14	5
소송	1	8	2	5
기타	12	10	14	18
합계	48	53	72	71

□ 최근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지정건수는 증가세를 지속

- 지난해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금 규모를 확대하고 올해 1월에도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을 위해 벌점 기준을 강화
 - 2016년 12월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한도가 유가증권 기업은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 코스닥 기업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¹⁾
 - 올해 4월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심사대상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시 의무를 강화²⁾
- 코스닥 기업의 공시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 못지않게 기업 내부의 공시 전문인력 확보와 공시 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

선임연구원 홍지연

1) 한국거래소, 2016. 11. 11,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2) 금융위원회, 2018. 4. 4,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완료, 보도자료.